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	----

제출년월일 : 2002.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2002. 4. 20)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정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지정권자가 시장·도지사로서 되어 있어 지정권자를 시장으로 함(안 제19조의2)
- 나.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를 연 5퍼센트에서 연4퍼센트로 함(안 제21조의2)
- 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변상금의 연체요율”을 “토지에 대한 변상금과 매각대금의 연체요율”로 함(안 제2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도시재개발법
- 나. 합의사항 : 없음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02. 6. 5 ~ 6. 24)결과 해당없음

마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호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1조의2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연체요율에 한하여”를 “토지에 대한 변상금과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매각대금 분할납부의 이자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매각대금부터 적용한다.
- ③(매각대금 연체요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7조제1항 단서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택 재개발지구 내에 토지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매각대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2. 1. 5>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개정 2002. 1. 5)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p>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1~3.(현행과 같음) 4. <u>시장</u> 5~6(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100조의3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u>5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p>제21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연 <u>4퍼센트</u> 1~3.(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안)
<p>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동일 재개발구역 안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p> <p>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후 당초 계약자로부터 매매계약서 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연체요율에 한하여 연 10퍼센트로 한다.</p> <p>②구청장이 제22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p> <p>〈개정 2002. 1. 5〉</p> <p>③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p>	<p>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 …………… …………… …………… …………… 토지에 대한 변상금과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p> <p>② ~ ③(현행과 같음)</p>